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라목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공매도임을 알릴 것. 이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알린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제208조의4 제목 중 “매출에 따른 주식”을 “매출 등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80조의4 본문에서”를 “법 제180조의4 제1항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0조의4 단서에서”를 “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0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6(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상환기간을 90일 이내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환기일에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의 매수가 어렵거나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1.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잔고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매도 주문 내역 등의 기록 및 5년간 보관 등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전산설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③ 법 제180조의2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려는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이용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에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그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것
- ④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연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5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제208조의7을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경우

별표22 표에 기목부터 비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5	6,000
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5	3,000
다.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6	10,000
리.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8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6	5,000
미. 법 제18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6	10,000
비. 법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9호의7	1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0조의2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제3조(한국거래소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697호 부칙 제7조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거래소는 제208조의7제3
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거래소
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생략)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u>증권시장업무규정</u> (이하 “ <u>증권시장업무규정</u>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 ----- ----- ----- ----- ----- <u>증권시장업무규정</u> (이하 “ <u>증권시장업무규정</u> ”이라 한다) 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u>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u> -----.
1. <u>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u>	1. <u>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u>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제1항에
서 -----

[illegible]

기간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180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이

-----.

② 법 제18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

-----.

1. 제1항 또는 제2항-----

-----.

경우 해당 매수 시점은 매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3. (생략)

<신설>

2·3. (현행과 같음)

제208조의6(차입공매도 관련 대차
거래 상환기간) ① 법 제180조
의5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
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상환기간을 90일 이내의 대여
자와 차입자가 합의한 기간으
로 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환기일에 매매거래정지, 상
장폐지 등 증권시장에서 상장
증권의 매수가 어렵거나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
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
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
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
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잔고 등의 관리에 관
한 사항

3. 공매도 주문 내역 등의 기록
및 5년간 보관 등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
축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전산설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80조의2에 따라 순보
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
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거
래를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
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
탁하려는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
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
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이용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
래소에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그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것

④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경
우 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
른 조치를 하였는지 연1회 확인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⑤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
인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제4항
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무

<u>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연 락 처	(02) 2100 - 2652